

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

소관부서 : 하수과

제정 2005· 4· 15 조례 제 546호
일부개정 2017· 9· 29 조례 제1342호
일부개정 2018· 7· 31 조례 제1413호
전부개정 2020· 6· 30 조례 제1609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3· 8· 14 조례 제197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.
2. “관리운영비”란 개방화장실의 편의·위생·청소용품 및 전기료, 상하수도료, 정화조 청소수수료,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
3. “비상벨”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3· 8· 14]

제3조(적용범위) ① 법 제3조 각 호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. <개정 2023· 8· 14>

② 법 제3조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.

[중전 제2조에서 이동 2023· 8· 14]
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·8·14>

[중전 제3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5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 ①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·8·14>

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.
2.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3. 공중화장실 등 내에 청소·관리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4.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·사진·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5.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6. 삭제 <2023·8·14>

② 시장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·8·14>

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「수도법」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한다. <신설 2023·8·14>

[중전 제4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6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·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
2. 화장지, 세정제 등 편의용품 비치
3.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 비치 및 시설의 유지·관리상황 기록

[중전 제5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7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공중화장실

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8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1. 음주,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
2.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,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,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3.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

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
2.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
3.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

[중전 제7조에서 이동 2023. 8. 14]

제9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소유·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·8·14>

[제목개정 2023·8·14]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10조(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·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
2.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
3.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
4.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

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지정할 것
2. 악취의 발생과 파리,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 및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
3. 화장지,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
4.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11조(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)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.

[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12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화장실 내부 평면도
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
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

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·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(명칭)·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[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13조(금지행위)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중화장실 등 내부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
2.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
3. 공중화장실 등에 분변·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
4.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
[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제14조(위탁관리 등)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(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등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·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[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·8·14]

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

부칙 <2020·6·30 조례 제1609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8·14 조례 제197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중화장실 관리카드

(제5조제3호 관련)

전 경 사 진												
소 재 지				화장실 명칭								
지 역 구 분				설 치 년 도				관 리 책 임 공 무 원		소 속		
설치 및 관리주체	설치주체									직 급		
	관리주체									성 명		
관 리 인				(전화번호 :)				월평균 이용인원				
규 모		부지 (㎡)	화장실 면 적 (㎡)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사용료	
				남	여	장애인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유료	무료
편의시설 내역		세면 시설	난방 시설	냉방 시설	환풍기	화장지 (자동 판매기)	비 누	수 건 (에어 타올)	탈취제 (방향제)	청소도구함		기 타
										내부	외부	
시설관리 내역		년월일	관리사항	금 액 (천원)	년월일	관리사항	금 액 (천원)	년월일	관리사항	금 액 (천원)		

[별지 제3호 서식]
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제 호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2 style="margin: 0;">개방화장실 지정서</h2> <p style="margin: 0;">(제7조제2항 관련)</p> </div> </div>				
개방화장실	건 물 명		전화번호	
	소 재 지			
개방화장실 현 황	시 설	변기 남 개(장애인화장실 개 포함) 여 개(장애인화장실 개 포함) 세면기 남 개, 여 개	지정 층	층
	관 리 자			
개방시간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「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 font-size: 1.2em;">이 천 시 장</p>				

[별지 제6호 서식]

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 (제11조제3항 관련)											
대표자	상호 (명칭)										
	성명										
	주소										
관 리 인		(전화번호 :)									
시설 내역	변 기	대변기 수					대변기 유형		소변기 수		
		남자용			여자용			동양식	서양식	성인	어린이
		비장애인	장애인	어린이	비장애인	장애인	어린이				
	편의시설	세면시설	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	환 풍 기				
		대		대			대				
1회 사용료		원									
「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											
년 월 일 이 천 시 장											